

과천도시공사 휴양시설 이용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휴양시설(이하 “휴양시설” 이라 한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소) 휴양시설이라 함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아파트(유진클래시움)와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아파트(신성미소지움) 및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휴양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이용자격 및 우선순위) 휴양시설 이용자격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임직원과 공사소속 시간강사 중 월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비상임이사
3. 공사에서 상근직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자 중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제4조(이용인원)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이용자격 대상자와 함께 하며 이용인원을 1가구 6명 이내로 제한 한다.

제5조(사용시간) 휴양시설 이용시간은 1박2일 기준으로 당일 14시 이후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일수) 성수기에는 1회 이용일수를 2박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경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 12월 20일 ~ 1월 5일) : 30,000원
2.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공휴일 포함) : 20,000원
3. 공사소유의 휴양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 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 선정) 여름 성수기 및 겨울 성수기에 휴양시설이용 신청자가 많아 중복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이용자를 결정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 제9조(예약신청 및 취소)** 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HR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여야 한다.
- ② 휴양시설을 이용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신청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양시설 이용료의 환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 ④ 공사소유의 휴양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 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용수칙) 휴양시설의 이용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내 집처럼 아껴 사용한다.
2. 휴양시설을 이용 후에 시설을 깨끗이 청소하며 각종 쓰레기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3. 이용한 수건 및 침구류 등은 세탁 후 건조대에 널어둔다.
4. 퇴실 할 때에 가스, 수도, 전기, 출입문 등 전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5.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구입가격 또는 복구가격)를 배상하여야 한다.
6. 휴양시설 이용 중 본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용과 공사 이미지에 저해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한다.

제11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휴양시설 부당이용에 대한 페널티 적용표 (제10조제6호 관련)

구 분	기 준	페널티 적용	비 고
이용인원 초과	1가구 6명 이내	6개월 사용불가	
이용시간 초과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 까지	6개월 사용불가	
이용자격 대상 외 사용	사용 당일 이용자격 대상자를 반드시 동반	1년 사용불가	
사용절차 미 준수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 승인 후 사용	1년 사용불가	
	개인 사정으로 사용 불가 시 7일전 통보	6개월 사용불가	
정리정돈 미흡	사용 후 청소 및 전기, 가스시설 점검	6개월 사용불가	
기타 공사이미지 저해 행위 등	저녁 22:00 이후 정숙한 이용 등	1년 사용불가	예)심야 고성 방가 등

[별표2]

휴양시설 이용료 환불 기준표 (제9조제3항 관련)

취 소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이용예정일 7일 이전	전 액 환 불	- 이용일 1일전 18:00까지 취소통보가 없는 경우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이용예정일 1일 이전	납입금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당일 취소	환 불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제9조제2항 관련)

휴양시설 이용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기 납 부 액	원	환 환 청 구 액	원
환 환 청 구	환 환 사 유		환 환 내 역
계좌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p>과천시공사 휴양시설이용지침 제9조 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인 주 소 : 성 명 :</p>			
<h2 style="margin: 0;">과천시공사사장 귀하</h2>			